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지원 안내

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

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서 **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이 필요한 법인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 점을 안내**드리기 위하여 메일드립니다.

금융감독원은 '新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기한,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'한다고 보아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에 관한 보도자료(221216)를 배포하였습니다.

감사인선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.

□ *(구성원수)* ***반드시 5인 이상****(5~6인)*

□ *(대상회사)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 주식회사, 금융회사*

□ *(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)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(사내이사·대표이사 등은 불가)*

○ *①감사 1명, ②사외이사 2명이내,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, ④주주 1명(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), ⑤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*

(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, 금감원 보도자료 9p)

다만, 상기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**경영·회계·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** 가능합니다.
(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)

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에는 회계사, 변호사, 대학교수 등 경영, 회계,· 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'중소기업회계지원 자문단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동 자문단은 회계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상장기업의 외부감사 대응 · 상장기업의 내부감사기구 운영 · **중소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**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.

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있는 경우,
아래와 같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* 회계지원센터 번호(1533-2900), 메일(krxaa@krx.co.kr), 홈페이지 (https://accouting.krx.co.kr)